

소 송 위 임 장

사 건	분할연금수급권 부존재 확인의 소
원 고	채대규
피 고	양춘희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아래에서 정한 권한을 수여합니다.

수 임 인	법무법인 한미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5, 나동 302호(서흥빌딩) 전 화 : 02-733-3951 팩스: 02-6455-5487
-------------	---

수 권 사 항	(1) 일체의 소송행위 (2) 변제의 수령 (3) 상소의 제기 (4) 반소의 제기 (5)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화해 (6) 복대리인의 선임 (7) 기타 특별수권사항		
	기타 특별수권사항		수권여부
	소의 취하	제기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 소송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	○
	상소의 취하	원심을 유지·확정하면서 상소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	○
	청구의 포기	위임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소송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	○
	청구의 인낙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소송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	○
	소송탈퇴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

2026. 5. .

위임인 채대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2로 121, 603동 1602호

담당 변호사 지정서

사 건	분할연금수급권 부존재 확인의 소
당 사 자	원 고 채대규 피 고 양춘희
위 사건에 관하여 당 법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 5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담당변호사	김철기(04951), 임지선(18539)
2026. 5. . 법무법인 한미  대표변호사 김철기(0495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5, 나동 302호(서흥빌딩) T. 02-733-3951 F. 02-6455-5487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발급번호 : 2026본안-198104호

(제출용)

발급일시 : 2026.05.12. 14:35

경 유 확 인 서



증표종류 : 본안(일반)

증표번호 : 26001-066925

회 원 명 : 법무법인 한미

본회는 변호사법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에 따라 위 회원이
아래 사건에 대한 소송위임장(변호인 선임서 포함)을 본회에 경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관할기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유형 : 민사 1심

사건번호 : 미정

사 건 명 : 분할연금수급권 부존재 확인의 소

위 임 인 : 원고 채대규

상 대 방 : 양춘희

2026. 05. 12.

서 울 지 방 변 호 사 회



위 확인서를 법원,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제출한 후에 재출력, 복사, 수정하여 재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 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 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확인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임사건 경유업무 시스템(<https://via.seoulbar.or.kr>)에서 진위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